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55
----------	-----

제출연월일 : 2008. 6. 23.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정함(안 제2조).
- 나.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와 관리범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기일을 종전 20일에서 30일로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5조).
- 라.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마.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을 개별건축물, 타공사, 타행위로 세분화하여 기준을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지하수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8. 5. 23. ~ 6. 12. / 접수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2. 구청장 : 제1호 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제3조제1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

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
  3. 규칙으로 정하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한 경우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점검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

## 니 하는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라 한다)의 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납금은 공사완료후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 한다.
- ⑥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⑦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용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이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사용료는 상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아하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2개월마다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상수도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⑤ 세대분할 및 계측기 고장 등에 따른 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수조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한다.
  -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사용량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지하수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수량의 인정방법은 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정확한 하수배출량 산

정을 위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측장치의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③ 사용자는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배출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거나 검사유효기간의 경과와 노후로 인한 자연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5조(계측기의 점검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나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점검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의 점검시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 옥내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

용한 자에 대한 점용료는 사실상 점용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시장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납부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태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나 원인자가 태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태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태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태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태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태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sup>3</sup>/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태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태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하여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경우 태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태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납부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부과시기 : 준공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2. 납부기한 :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30일. 다만, 그 납부기한 내에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

제21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1리터당 1원씩 징수한다.

② 시장은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전년도 반입물량이 있는 경우 그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수수료를 월 1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분뇨 반입시에 처리장의 관계직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③ 위 생처리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분뇨반입필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수수료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이 경우 월 10세제곱미터 이내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에 한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이 경우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에 해당 사용료
6.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한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7.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의 사용료
8. 전기·통신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의 긴급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

여 시설물내 지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요금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 등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된 때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제23조(가산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가산금의 착오 납입, 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준용)**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급수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별표 6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고지분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분부터 적

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대전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대전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업 종	구 分	내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소매점(구멍가게)등으로서 16m<sup>2</sup> 이하의 소규모 가게 및 이와 유사한 업소</li> <li>· 공용급수전</li> <li>· 신문보급소, 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li> <li>·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li> <li>· 경로당(노인회관), 양로원, 놀이방</li> <li>·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시설</li> </ul>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li> <li>· 공·사설소화전</li> <li>·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li> <li>· 지하도 무료화장실(상가겸용 제외)</li> <li>· 소방용수</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li> <li>· 학교, 정당, 산림조합,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제외)</li> <li>·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li> <li>·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 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li> <li>· 병영</li> <li>· 신문사, 방송국</li> <li>·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기관</li> <li>· 급수탑에 의한 급수(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li> <li>·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li> </ul>	

업 종	구 분	내 용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점객업</li> <li>· 식품보존업</li> <li>· 공연장,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li> <li>· 숙박업(여인숙 제외)</li> <li>·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li> <li>· 병의원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제외), 가축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m<sup>2</sup>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m<sup>2</sup>)이하의 안마시술소</li> </ul> </li> <li>· 찜질방 등</li> <li>· 차량판매정비(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가스 충전소 포함, 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li> <li>· 예식장, 장의예식장(장의사 제외)</li> <li>· 학원(독서실 포함, 피아노개인지도 등 교습소 제외)</li> <li>· 전문사진 현상소(사진관 제외)</li> <li>·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m<sup>2</sup>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li> <li>·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li> <li>· 빌전소</li> <li>· 이·미용업소(실면적 33m<sup>2</sup>이하 제외)</li> <li>·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li> <li>· 화훼, 식목업</li> <li>· 관광업(단순관광 알선업 제외)</li> <li>· 오피스텔, 리조텔 및 이와 유사한 업소</li> <li>· 도축장, 정육점</li> <li>· 양조업, 제방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폐인트류 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폐인트류 제조업, 가구료 제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 제조 포함)</li> <li>· 염색업 및 섬유류 제조가공업, 식료품 제조가공업, 피혁제조 가공업 소, 기타 월평균 200m<sup>2</sup>이상 사용하는 제조 가공업소</li> </ul>

업 종	구 분	내 용
영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li> <li>·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li> <li>·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li> <li>·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li> <li>·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 (다만, 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제외)</li> <li>·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등 일시 사용에 한함.</li> <li>·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다만, 최종요율단계적용)</li> </ul>
목 욕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목욕탕에 대한 급수(「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준함)</li> </ul>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 목욕탕업(「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준함)</li> <li>· 영업용이외의 안마시술소</li> </ul>
산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li> </ul>	

(주)

-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3)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상수도, 지하수 등 모든 배출용수를 구분하지 않고 아래 요율표에 의한다.

## 2.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구분 업종	사용량 (m <sup>3</sup> /월)	m <sup>3</sup> 당요금 (원)	비 고
가 정 용	1 - 10	140	
	11 - 20	180	
	21 - 30	270	
	31 - 40	350	
	41 - 50	380	
	51 이상	420	
업 무 용	1 - 20	180	
	21 - 50	350	
	51 - 100	410	
	101 - 300	460	
	301 이상	490	
영 업 용	1 - 30	290	
	31 - 50	410	
	51 - 100	590	
	101 이상	790	
목 욕 용	1 - 200	180	
	201 - 700	190	
	701 - 1000	220	
	1001 이상	240	
2종	1 - 200	500	
	201 - 500	640	
	501 - 1000	830	
	1001 이상	900	
산 업 용		210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 [별표 2]

### 수질하수도 사용료(제11조제3항 관련)

1. 대상항목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 2. 사용료 산정기준

- 가.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나.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다.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 3.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 $m^3/\text{시간}$ )]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표 4]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 \text{ m}^3/\text{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text{m}^3/\text{일}$  이상인 경우  $10\text{m}^3/\text{일}$ 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text{m}^3/\text{일}$ )에 단위단가(원/ $\text{m}^3/\text{일}$ )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단위 :  $\text{m}^3/\text{일}$ )

구 분	최초행정행위 시오수발생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 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별표 5]

###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방식(제18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 관련)

####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m^3/\text{일})} \times \alpha$$

$$\triangleright \alpha = \left(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6]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제26조 관련)

연번	위임권한	근거법령	비고
1	·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2	·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3	·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 조례 제6조	
4	· 하수관거 점검 등	· 조례 제7조	
5	·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 조례 제8조	
6	· 배수설비 준공검사	· 조례 제9조	
7	· 배수설비의 유지 · 관리	· 조례 제10조	
8	· 사용료 징수	·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9	· 하수배출량의 산정	· 조례 제13조	
10	· 하수배출량의 조사	· 조례 제14조	
11	· 사용료의 조정	· 조례 제16조	
12	· 점용료의 징수	· 조례 제17조	
13	·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다만, 시장이 인 · 허가 및 승인한 사업은 제외한다.	·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	
14	· 수수료의 부과 · 징수 등	· 조례 제21조	
15	· 감면. 다만, 시장이 인 · 허가 및 승인한 사업은 제외한다.	· 조례 제22조	
16	· 가산금의 징수. 다만, 시장이 인 · 허가 및 승인한 사업은 제외한다.	· 조례 제23조	
17	·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 조례 제24조	
18	·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다만, 시장이 인 · 허가 및 승 인한 사업은 제외한다.	· 조례 제25조	

## □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 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거"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중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중수도의 설치)** 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재이용수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

② 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량의 기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야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73조(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 2. 하수처리구역 안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관리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특별시장, 광역시장
2.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작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污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5.5.31>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4. 삭제 <200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지역 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2.2.4, 2005.5.31>

1.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⑤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

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

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다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지적법」 제3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시행일:2008.8.28] 제22조제4항제4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배출허용기준) ①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5.17>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 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⑧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부착시기 및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 조신설 2007.5.17]

###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7.20>

제75조 (청구기한의 연장등) ①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

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③ 제73조·제74조 및 제80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제76조 (보정요구)** ① 제73조·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77조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7조 (결정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5.1.5>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12.31>

**제79조 (청구의 효력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30조(세대분할)** 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상수도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을 건축물관리대장의 세대수 범위 안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구당 15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1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월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사용량을 평균사용량(소수점이하 절사)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상수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가구분할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①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본부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1.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3개 시·도 이상인 경우 : 국무총리에게 선포 건의

2.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2개 시·도 이하인 경우 : 중앙본부장이 선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를 받은 국무총리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 또는 중앙본부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원 등 이 법에 의한 응급조치

2.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비상소집

3. 당해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

4.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⑤ 중앙본부장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5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